

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제10차 정무위원회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〉

■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2123호)

2025. 11.

정 무 위 원 회
전 문 위 원 최 기 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: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	2
※ 참고자료	8

I. 제안경위

1. 제안자 : 김정재의원 등 11인
2. 제안일 : 2025. 8. 12.
3. 회부일 : 2025. 8. 13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6·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거나 혹은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선 이들을 학도병이라 함.

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이들은 포항·기계·안강·장사·다부동 등 6·25전쟁의 크고 작은 전투에 투입되어 험악한 공을 세웠지만, 참전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숨겨진 영웅들임.

이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학도병인 6·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(안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).

Ⅲ. 검토의견: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

- 개정안은 6·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전한 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‘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’의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(안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)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8조의3(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) ① 학도병인 6·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꾀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(이하 “학도의용군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학도의용군회는 법인으로 한다. ③ 학도의용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④ 학도의용군회의 조직,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,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,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, 제32조의2,

제19조(회원의 자격) 제2조에 따른 6·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·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

제33조,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6·25참전유공자회”는 “학도의용군회”로 본다.

⑤ 학도의용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9조(회원의 자격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.

1. 6·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: 제2조에 따른 6·25전쟁 참전유공자
2.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: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
3. 학도의용군회의 회원: 제2조제2호라목 중 학도병인 6·25전쟁 참전유공자

- 현행법에 따른 6·25전쟁 참전유공자¹⁾에는 6·25전쟁에 참전한 군인·경찰, 학생 신분의 학도병, 강제동원 노무자, 유격대원 등이 등록되어 있고, 6·25전쟁 참전 관련 법정 공법단체로는 ‘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’ 1개만 인정되고 있음.²⁾

<6·25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>

(2025. 8. 31. 기준, 단위: 명)

구분	합계	육군	해군	공군	해병대	노무자	유격대	학도병	경찰	전·의경	기타
6·25 참전 유공자	28,511	19,221	1,178	957	662	441	1,702	300	814	80	3,156

자료: 국가보훈부

- 개정안은 6·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으로 병역의무가 없는데도 자진 참전³⁾하여 국가 수호에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‘대한민국

- 1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(생 략)
 2. “참전유공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6·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 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 - 가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군인
 - 나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
 - 다. 6·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- 라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 - 마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- 2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) ① 6·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(이하 "6·25참전유공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6·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③ 6·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④ 6·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학도의용군회'를 공법단체로 설립·운영함으로써 권익을 보다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일응 수궁할 수 있음.

- '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'를 설립·운영할 경우 국가로부터 단체 운영비(인건비 및 활동비 등) 등을 보조받고⁴⁾, 직접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단체 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□ 다만,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첫째, 과거 관련 임의 단체들이 난립함에 따라 6·25참전유공자에 대한 체계적·효율적인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, 이를 통합하기 위하여 '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'가 설립⁵⁾되었는 바, 그 설립 연혁 및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둘째, 개정안과 같이 참전 신분별 공법단체를 인정할 경우, 대한민국 6·25참전유공자회 내 다양한 하위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, 추가로 계급별·군별 등 여러 형태의 참전단체⁶⁾의 분리 인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따른 재정운용의 비효율과 추가 재원 소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.⁷⁾

3) 육군본부가 발간한 책자에 따르면, 약 27,700여명의 학도병이 참전하였음.(육군본부, “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” p.69)

4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보조금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·25참전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5) 대한민국 6·25참전유공자회 설립 경과(참고자료 1) 참조(p. 8)

6) 학생신분의 학도병, 참전여성, 강제동원 근로자, 유격대원, 국민방위군, 향토방위대원, 부사관총연합회, 해병대전우회, ROTC중앙회, 대령연합회 등

- 셋째, 6·25참전유공자회는 현재 회원이 2만 8천여명(2025년 8월 기준)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 연령이 93세에 달해 단체의 존립 위기 상황인 바, 별도 단체를 신설해 운영하기 보다는 6·25참전유공자회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⁸⁾.
-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할 경우, 계급별·군별 등 다양한 형태의 6·25참전단체 인정 요구가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, 6·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규모 및 향후 운영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.
- 관련하여,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,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,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,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, 4·19민주혁명회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⁹⁾
-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학도의용군도 참전유공자이므로 해당 유공자회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어 별도 법인 신설 필요성이 높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- 한편, 개정안 제18조의3제3항¹⁰⁾ 및 부칙 제2조¹¹⁾ 중 ‘국가보훈처장’

7)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 시 소요예산(참고자료 2) 참조(p. 9)

8) 현재 6·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확대(유족 등 추가)를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계류중임.

9) 개정안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(참고자료 3) 참조(p. 10)

10) 개정안 제18조의3(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) ③ 학도의용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11) 개정안 부칙 제2조(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준비) ①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원을 대표하는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은 2023년 6월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을 통하여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바, 그에 맞추어 ‘국가보훈부장관’으로 수정이 필요함.

문 의 처
02)6788-5107

-
1. 설립취지
 2.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
 3. 사무소의 주소지
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②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21조(제1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참고 1

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 설립 경과

- 2000. 8. 8. 재향군인회에 6·25 관련 임의단체 통합 의뢰
 - 6.25 관련 「창군 및 6.25참전동지회」 등 총 21개 임의단체 난립
 - 기타 임의단체 29개 지역에서 활동

- 2000. 8. 17. 6·25참전 관련 4개 단체 대표 통합에 합의

단 체 명	대 표 자
창군 및 6·25참전동지회	이 춘 경
한국전쟁참전자회	윤 영 모
6·25참전용사회	이 교 덕
육해공군6·25참전동지회	강 낙 희

- 2000. 9. 21. 4개 단체 발전적 해체 및 통합
 - 이후 참전경찰, 철도공무원, 학도병, 유격대 등을 통합
- 2001. 3. 28. 통합 총회 개최
- 2001. 5. 16. 사단법인 설립 허가(사단법인 6·25참전전우기념사업회)
- 2004. 3. 26. 명칭변경(사단법인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)
- 2008. 9. 29. 6·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정
 - * 2008. 2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국회 통과
- 2009. 3. 7. 공법단체로 전환
 - * 2009. 1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국회 통과
(6·25참전유공자회 설립근거 명시)

자료: 국가보훈부

참고 2

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 시 소요 예산

○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에 따른 소요 예산

- 현재 공법단체 '6.25참전유공자회' 기준으로 산정¹²⁾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	비 용 추 계				
			2026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
사업비	호국보훈의달 위로행사 등		105,000	105,000	105,000	105,000	105,000
운영비	사무비		81,692	81,692	81,692	81,692	81,692
	중앙회 활동비		70,000	70,000	70,000	70,000	70,000
	지부 운영비(594×17개×12월)		121,176	121,176	121,176	121,176	121,176
	지회 운영비(205×231개×12월)		568,260	568,260	568,260	568,260	568,260
	합계		841,128	841,128	841,128	841,128	841,128
인건비	중앙회 (25년 기준)	회장(2,153×12)	27,409	28,232	29,079	29,951	30,850
		부회장(1,879×12)	23,921	24,639	25,378	26,139	26,923
		감사(1,879×12)	23,921	24,639	25,378	26,139	26,923
		사무총장(1,831×12)	23,310	24,009	24,730	25,472	26,236
		국장(4명×1,772×12)	90,236	92,943	95,731	98,603	101,561
		과장(4명×1,679×12)	85,500	88,065	90,707	93,428	96,231
		사원(8명×1,650×12)	168,047	173,088	178,281	183,629	189,138
		운전원(1명×1,760×12)	22,406	23,078	23,771	24,484	25,219
	지부 (24년 기준)	지부장(17명×1,714×12)	370,950	382,079	393,541	405,347	417,507
		사무국장(17명×1,668×12)	360,995	371,824	382,979	394,469	406,303
		과장(16명×1,656×12)	337,315	347,435	357,858	368,594	379,652
		사원(1명×1,650×12)	21,006	21,636	22,285	22,954	23,643
	퇴직총당금		121,371	125,012	128,763	132,626	136,605
	보험료		96,411	99,304	102,283	105,351	108,512
	합계		1,721,164	1,772,799	1,825,983	1,880,762	1,937,185
총합			2,672,292	2,723,927	2,777,111	2,831,890	2,888,313

※ 인건비는 '25년 기준으로 3% 증가율 적용

자료: 국가보훈부

12) 6·25참전유공자회 운영 소요 예산인 바, 그 중 학도병만을 회원으로 하므로 소요 예산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됨.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, 중앙회 규모를 6·25참전유공자회의 50% 수준으로, 지부는 3개를 두는 것으로 가정하면, 운영비와 인건비(사업비는 제외)는 향후 5년간(2027년~2031년) 총 38억 200만원(연평균 7억 6,000만원)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.

참고 3

개정안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

단체	의견
대한민국6·25 참전유공자회	< 반대 > 6·25참전유공자회는 여러 단체를 2001년 통합하여 2009년에 법적 단체화 하였음. 1개 단체를 분리 시 모든 단체도 분리 요구할 것이므로 절대적 개정 불가
재일학도의용 군동지회	< 반대 > 6·25참전유공자회와 겹침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6·25참전유공자회 의견과 같음
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	< 반대 > 이미 법정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가입대상과 중복
대한민국월남전 참전자회	< 반대 > 6·25전쟁 학도병이 이미 6·25참전유공자회에 가입된 상황에서 6·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들이 초고령화로 인하여 회원 수가 대폭 감소되어 단체의 존폐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이 설립되는 것은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의 퇴색과 품격 저하를 유발함
4·19민주혁명회	< 반대 > 단체를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6·25참전유공자회에서 활동해야함

자료: 국가보훈부

